

의안번호	2216195
의 퇴 인	임호선의원
회 답 일	2026. 3. 18.
추계번호	26B036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0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	제1항에 따른 주관방송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방송등을 위한 재난채널을 두어야 함(제4항 신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0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현행법¹⁾은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이 재해·재난·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KBS)를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주관방송사가 재난방송등을 위한 재난채널을 두도록 하려는 것으로, 재난채널 운영 등을 위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는 별도의 재난채널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재난정보 및 재난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콘텐츠 등을 KBS 재난포털 및 유튜브 채널(세이프 K)에 게시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재난채널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 여부 및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 현 시점에서는 재난채널의 매체 형태 및 수, 편성 범위, 운영 방식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국가의 지원 여부 및 규모 등을 예측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재난채널의 성격·범위·방법·역할과 관련한

1) 제40조(재난방송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자막의 형태로 재난방송등을 송출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2.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 「방송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자
4.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제40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한다.

기본 정책 방향 및 실행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의 지원 여부 및 규모를 예측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임

- 참고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 운영 및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음

[표 1] 재난방송 운영 및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2026
재난방송 운영지원	KBS 재난방송 운영지원	재난방송등 주관방송사인 KBS가 신속하게 재난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인프라 등을 구축하여 국민에게 신속한 재난방송을 제공	2,719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운영	24시간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방송 실시현황 모니터링 및 체계적인 상황관리 등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운영	567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터널,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음영 지역에 라디오, DMB 수신환경 개선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방송의 원활한 수신을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안전 확보 및 재난피해 예방을 지원	3,258
	재난방송 온라인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재난방송 온라인시스템의 신속한 장애(재난) 관리·상황전파, 재난자원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402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